

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(안)

의안 번호	90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5월 30일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적립액 등 증가로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재정안정화계정) 운용계획상 지출계획의 '재무활동' 등의 금액이 당초 대비 20%를 초과하여 변경됨
- 나. 이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(안)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적립금 및 이에 따른 예치금 증가 등을 반영하기 위해 운용계획을 변경함
- 나. 운용규모 : 2,875,087백만원(당초계획 대비 1,054,364백만원 증가)

- 수입·지출계획 변경내용

< 수입계획 >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당 초 (A)	기 금 운 용 계획 변경안(B)	증 감 (C=B-A)
합 계	1,820,723	2,875,087	1,054,364
기 타 회 계 전 입 금	-	1,062,488	1,062,488
이 자 수 입	86,548	61,835	△24,713
예 치 금 회 수	1,734,175	1,750,764	16,589

< 지출계획 >

(단위:백만원, %)

정책사업/단위사업/세부사업/편성목	당 초 (A)	기 금 운 용 계획 변경안(B)	증 감 (C=B-A)	증 감 율 (D=C/A)
합 계	1,820,723	2,875,087	1,054,364	57.9
효 율 적 재 정 운 영	-	155,000	155,000	-
공사·공단 상환 지원	-	155,000	155,000	-
서울교통공사 출자 지원	-	155,000	155,000	-
출 자 금	-	155,000	155,000	-
재 무 활 동	1,820,513	2,719,877	899,364	49.4
내 부 거 래 지 출	160,000	160,000	-	-
보 전 지 출	1,660,513	2,559,877	899,364	54.2
여 유 자 금 예 치	196,923	1,096,287	899,364	456.7
예 치 금	196,923	1,096,287	899,364	456.7
지방채 차입금 원금 상환	1,419,042	1,419,042	-	-
지방채 차입금 이자 상환	44,548	44,548	-	-
행 정 운 영 경 비	210	210	-	-

○ 수입계획 변경

-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적립을 위해 전입금 1,062,488백만원 증가

▶ 전입금 : (당초) 0원 → (변경) 1,062,488백만원

·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(3조 2,548억원) 중 법정 의무경비(1조 3,298억원)를 공제한 잔액(1조 9,250억원)의 55.2% 적립

- 예금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수입 24,713백만원 감소
 - ▶ 이자수입 : (당초) 86,548백만원 → (변경) 61,835백만원
 - 시금고 정기예금 금리(6개월물)가 '22. 12월 4.74%에서 '23. 5월 3.79%로 0.95% 하락 등을 반영함
-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예치금회수 16,589백만원 증가
 - ▶ 예치금회수 : (당초) 1,734,175백만원 → (변경) 1,750,764백만원

○ 지출계획 변경

- 서울교통공사 공사채 상환을 위한 출자금이 당초대비 155,000백만원 증가
 - ▶ 출자금 : (당초) 0백만원 → (변경) 155,000백만원
- 순세계잉여금 적립으로 예치금이 당초대비 899,364백만원 증가
 - ▶ 예치금 : (당초) 196,923백만원 → (변경) 1,096,287백만원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